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『퇴직연금 정기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 한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이다.

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

-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한다. (이하 "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" 이라 한다.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,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.(이하 "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"이라한다.)
- ③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,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「최초 계약기간」단위로 자동 재예치된다.
- ④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'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'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(자동재예치일)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한다.
- ⑤ <u>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</u> <u>재예치하고,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수 만큼 동일상품</u> 으로 재예치한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

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한다. <u>다만,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</u> 우, 해당 정기예금의 계약기간 이내에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고시금리 를 적용한다.

②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. 해당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적용한다. 다만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한다.

제6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식으로 하며, 자동 재예치 시에는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한다.

제7조 중도해지

-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. 다만,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 - 1. 퇴직,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2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나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 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
 - 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 - 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5. 수탁자의 사임
 - 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7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
 - 8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
 - 9. 수수료의 징수
 - 10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

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적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. 단, 제2항 제9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(가산금리 포함)을 적용한다.

1.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

- 계약기간 1년 이하 : 기간별 약정금리
- 계약기간 2년 :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- <u>계약기간 3년 :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,</u>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- 계약기간 5년 :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,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,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
2.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

- 계약기간 2년 미만 :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. 단, 6개월 미만은 3개월,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,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,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.
- <u>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: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</u> 도해지이율
-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: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 도해지이율

제8조 분할지급

-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
-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.

제9조 기 타

-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하다.
- ②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.